# 일도이동 유피테르6차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18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에 대한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최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도이동 유피테르6차 분양홍보관 내 분양 관련 상담전화(064-723-0771) 등을 통해 분양 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삼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 광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18)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가(2022.09.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일반공급 | |
|---|---|---|
|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br>(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O | O | O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O | O | X | X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o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견본주택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전매 제한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3.10.04.(수) | 2023.10.05.(목) | 2023.10.12.(목) | 2023.10.23.(월)~2023.10.25.(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 장 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72<br>유피테르6차 304호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신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주식회사 제주스토리와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에게 있습니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5.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시공자인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이 부담한다.
6. 분양대금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56592 (2023.09.15.)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72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층 1개동 총 63세대 중 일반공급 40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
| 민영 주택 | 2023000474 | 01 | 55.7900A | 55A | 55.7900 | 8.7483 | 64.5383 | 28.4838 | 87.5138 | 14.1162 | 3 | 1 |
| | | 02 | 98.5880A | 98A | 98.5880 | 14.5489 | 113.1369 | 50.3344 | 153.7374 | 24.9452 | 8 | 1 |
| | | 03 | 105.4250A | 105A | 105.4250 | 14.9940 | 120.4190 | 53.8251 | 163.8351 | 26.6751 | 5 | 0 |
| | | 04 | 110.1125A | 110A | 110.1125 | 16.8313 | 126.9438 | 56.2185 | 172.2905 | 27.8612 | 7 | 1 |
| | | 05 | 129.6150A | 129A | 129.6150 | 18.3174 | 147.9324 | 66.1756 | 201.3106 | 32.7958 | 17 | 3 |
| | 합 계 | | | | | | | | | | 40 | 6 |

| 호수 | 형별 | 약식 표기 | 전용면적 | 벽체공용 | 계단실1,2,3 | 지하주차장 | 기타공용 | 공용소계 | 분양면적 (E=C+D) | 대지지분 |
|---|---|---|---|---|---|---|---|---|---|---|
| 지상2층 | 202호 | 55A | 55.7900 | 3.2400 | 5.5083 | 21.8440 | 1.1315 | 28.4838 | 87.5138 | 14.1162 |
| | 203호 | 98A | 98.5880 | 4.8150 | 9.7339 | 38.6012 | 1.9993 | 50.3344 | 153.7374 | 24.9452 |
| | 204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205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206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207호 | 110A | 110.1125 | 5.9595 | 10.8718 | 43.1135 | 2.2332 | 56.2185 | 172.2905 | 27.8612 |
| 지상3층 | 301호 | 105A | 105.4250 | 4.5850 | 10.4090 | 41.2781 | 2.1380 | 53.8251 | 163.8351 | 26.6751 |
| | 303호 | 98A | 98.5880 | 4.8150 | 9.7339 | 38.6012 | 1.9993 | 50.3344 | 153.7374 | 24.9452 |
| | 304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지상4층 | 403호 | 98A | 98.5880 | 4.8150 | 9.7339 | 38.6012 | 1.9993 | 50.3344 | 153.7374 | 24.9452 |
| | 405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406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지상5층 | 503호 | 98A | 98.5880 | 4.8150 | 9.7339 | 38.6012 | 1.9993 | 50.3344 | 153.7374 | 24.9452 |
| | 504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505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506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507호 | 110A | 110.1125 | 5.9595 | 10.8718 | 43.1135 | 2.2332 | 56.2185 | 172.2905 | 27.8612 |

| | | | | | | | | | | |
|---|---|---|---|---|---|---|---|---|---|---|
| 지상6층 | 603호 | 98A | 98.5880 | 4.8150 | 9.7339 | 38.6012 | 1.9993 | 50.3344 | 153.7374 | 24.9452 |
| | 604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606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607호 | 110A | 110.1125 | 5.9595 | 10.8718 | 43.1135 | 2.2332 | 56.2185 | 172.2905 | 27.8612 |
| 지상7층 | 701호 | 105A | 105.4250 | 4.5850 | 10.4090 | 41.2781 | 2.1380 | 53.8251 | 163.8351 | 26.6751 |
| | 704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705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706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707호 | 110A | 110.1125 | 5.9595 | 10.8718 | 43.1135 | 2.2332 | 56.2185 | 172.2905 | 27.8612 |
| 지상8층 | 801호 | 105A | 105.4250 | 4.5850 | 10.4090 | 41.2781 | 2.1380 | 53.8251 | 163.8351 | 26.6751 |
| | 802호 | 55A | 55.7900 | 3.2400 | 5.5083 | 21.8440 | 1.1315 | 28.4838 | 87.5138 | 14.1162 |
| | 803호 | 98A | 98.5880 | 4.8150 | 9.7339 | 38.6012 | 1.9993 | 50.3344 | 153.7374 | 24.9452 |
| | 806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807호 | 110A | 110.1125 | 5.9595 | 10.8718 | 43.1135 | 2.2332 | 56.2185 | 172.2905 | 27.8612 |
| 지상9층 | 901호 | 105A | 105.4250 | 4.5850 | 10.4090 | 41.2781 | 2.1380 | 53.8251 | 163.8351 | 26.6751 |
| | 902호 | 55A | 55.7900 | 3.2400 | 5.5083 | 21.8440 | 1.1315 | 28.4838 | 87.5138 | 14.1162 |
| | 903호 | 98A | 98.5880 | 4.8150 | 9.7339 | 38.6012 | 1.9993 | 50.3344 | 153.7374 | 24.9452 |
| | 905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907호 | 110A | 110.1125 | 5.9595 | 10.8718 | 43.1135 | 2.2332 | 56.2185 | 172.2905 | 27.8612 |
| 지상10층 | 1001호 | 105A | 105.4250 | 4.5850 | 10.4090 | 41.2781 | 2.1380 | 53.8251 | 163.8351 | 26.6751 |
| | 1003호 | 98A | 98.5880 | 4.8150 | 9.7339 | 38.6012 | 1.9993 | 50.3344 | 153.7374 | 24.9452 |
| | 1004호 | 129A | 129.6150 | 5.5200 | 12.7974 | 50.7495 | 2.6287 | 66.1756 | 201.3106 | 32.7958 |
| | 1007호 | 110A | 110.1125 | 5.9595 | 10.8718 | 43.1135 | 2.2332 | 56.2185 | 172.2905 | 27.8612 |
| 합 계 | | | 4457.4415 | 206.7215 | 440.0995 | 1745.2681 | 90.3992 | 2275.7668 | 6939.9298 | 1127.8427 |

■ 공급금액 및 납부금액

| 약식표기 | 공급세대수 | 호수구분 | 층구분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합계 | | 입주시 |
| 55A | 3 | 202 | 2층 | 142,857,143 | 157,142,857 | 0 | 300,000,000 | 30,000,000 | 270,000,000 |
| | | 802 | 8층 | 152,380,952 | 167,619,048 | 0 | 320,000,000 | 32,000,000 | 288,000,000 |
| | | 902 | 9층 | 152,380,952 | 167,619,048 | 0 | 320,000,000 | 32,000,000 | 288,000,000 |
| 98A | 8 | 203 | 2층 | 247,619,048 | 247,619,048 | 24,761,904 | 520,000,000 | 52,000,000 | 468,000,000 |
| | | 303 | 3층 | 214,285,714 | 214,285,714 | 21,428,572 | 450,000,000 | 45,000,000 | 405,000,000 |
| | | 403 | 4층 | 228,571,429 | 228,571,429 | 22,857,142 | 480,000,000 | 48,000,000 | 432,000,000 |
| | | 503 | 5층 | 228,571,429 | 228,571,429 | 22,857,142 | 480,000,000 | 48,000,000 | 432,000,000 |
| | | 603 | 6층 | 233,333,333 | 233,333,333 | 23,333,334 | 490,000,000 | 49,000,000 | 441,000,000 |
| | | 803 | 8층 | 242,857,143 | 242,857,143 | 24,285,714 | 510,000,000 | 51,000,000 | 459,000,000 |
| | | 903 | 9층 | 247,619,048 | 247,619,048 | 24,761,904 | 520,000,000 | 52,000,000 | 468,000,000 |

| | | | | | | | | | |
|---|---|---|---|---|---|---|---|---|---|
| | | 1003 | 10층 | 252,380,952 | 252,380,952 | 25,238,096 | 530,000,000 | 53,000,000 | 477,000,000 |
| 105A | 5 | 301 | 3층 | 247,619,048 | 247,619,048 | 24,761,904 | 520,000,000 | 52,000,000 | 468,000,000 |
| | | 701 | 7층 | 271,428,571 | 271,428,571 | 27,142,858 | 570,000,000 | 57,000,000 | 513,000,000 |
| | | 801 | 8층 | 276,190,476 | 276,190,476 | 27,619,048 | 580,000,000 | 58,000,000 | 522,000,000 |
| | | 901 | 9층 | 280,952,381 | 280,952,381 | 28,095,238 | 590,000,000 | 59,000,000 | 531,000,000 |
| | | 1001 | 10층 | 285,714,286 | 285,714,286 | 28,571,428 | 600,000,000 | 60,000,000 | 540,000,000 |
| 110A | 7 | 207 | 2층 | 228,571,429 | 228,571,429 | 22,857,142 | 480,000,000 | 48,000,000 | 432,000,000 |
| | | 507 | 5층 | 228,571,429 | 228,571,429 | 22,857,142 | 480,000,000 | 48,000,000 | 432,000,000 |
| | | 607 | 6층 | 233,333,333 | 233,333,333 | 23,333,334 | 490,000,000 | 49,000,000 | 441,000,000 |
| | | 707 | 7층 | 238,095,238 | 238,095,238 | 23,809,524 | 500,000,000 | 50,000,000 | 450,000,000 |
| | | 807 | 8층 | 242,857,143 | 242,857,143 | 24,285,714 | 510,000,000 | 51,000,000 | 459,000,000 |
| | | 907 | 9층 | 247,619,048 | 247,619,048 | 24,761,904 | 520,000,000 | 52,000,000 | 468,000,000 |
| | | 1007 | 10층 | 252,380,952 | 252,380,952 | 25,238,096 | 530,000,000 | 53,000,000 | 477,000,000 |
| 129A | 17 | 204 | 2층 | 257,142,857 | 257,142,857 | 25,714,286 | 540,000,000 | 54,000,000 | 486,000,000 |
| | | 205 | | 257,142,857 | 257,142,857 | 25,714,286 | 540,000,000 | 54,000,000 | 486,000,000 |
| | | 206 | | 257,142,857 | 257,142,857 | 25,714,286 | 540,000,000 | 54,000,000 | 486,000,000 |
| | | 304 | 3층 | 242,857,143 | 242,857,143 | 24,285,714 | 510,000,000 | 51,000,000 | 459,000,000 |
| | | 405 | 4층 | 247,619,048 | 247,619,048 | 24,761,904 | 520,000,000 | 52,000,000 | 468,000,000 |
| | | 406 | | 247,619,048 | 247,619,048 | 24,761,904 | 520,000,000 | 52,000,000 | 468,000,000 |
| | | 504 | 5층 | 257,142,857 | 257,142,857 | 25,714,286 | 540,000,000 | 54,000,000 | 486,000,000 |
| | | 505 | | 257,142,857 | 257,142,857 | 25,714,286 | 540,000,000 | 54,000,000 | 486,000,000 |
| | | 506 | | 257,142,857 | 257,142,857 | 25,714,286 | 540,000,000 | 54,000,000 | 486,000,000 |
| | | 604 | 6층 | 261,904,762 | 261,904,762 | 26,190,476 | 550,000,000 | 55,000,000 | 495,000,000 |
| | | 606 | | 261,904,762 | 261,904,762 | 26,190,476 | 550,000,000 | 55,000,000 | 495,000,000 |
| | | 704 | 7층 | 266,666,667 | 266,666,667 | 26,666,666 | 560,000,000 | 56,000,000 | 504,000,000 |
| | | 705 | | 266,666,667 | 266,666,667 | 26,666,666 | 560,000,000 | 56,000,000 | 504,000,000 |
| | | 706 | | 266,666,667 | 266,666,667 | 26,666,666 | 560,000,000 | 56,000,000 | 504,000,000 |
| | | 806 | 8층 | 271,428,571 | 271,428,571 | 27,142,858 | 570,000,000 | 57,000,000 | 513,000,000 |
| | | 905 | 9층 | 276,190,476 | 276,190,476 | 27,619,048 | 580,000,000 | 58,000,000 | 522,000,000 |
| | | 1004 | 10층 | 280,952,381 | 280,952,381 | 28,095,238 | 590,000,000 | 59,000,000 | 531,000,000 |

## 2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은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 60㎡이하 |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br>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 전용 85㎡초과 |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br>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구분 | 제주특별자치도<br>(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
| 전용면적 85㎡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3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일반공급 | 1순위 | 2023.10.04.(수) 09: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2순위 | 2023.10.05.(목) 09:00~17:30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ㅇ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br>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 | |
|---|---|
| **적용기준** |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br>-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br>(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br>■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br>■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br>■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br>(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br>**-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br>**-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br>•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제주특별자치도 1년 미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br>•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br>**•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br>**•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br>**-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br>***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br>**-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br>•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br>•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일반공급 | 1순위 | • 일시:2023.10.12. (목)<br>• 확인방법<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br>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br>*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br>- 2023.10.23.(월). ~2023.10.25.(수) (10:00~16:00)<br>• 장소<br>- 당사 견본주택<br>(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72 유피테르6차 304호) |
| |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3.10.12.(목) ~2023.10.21.(토)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br>**※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3.10.12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분양대금(계약금,잔금)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 | 국민은행 | 400401-01-328085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란에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서명 기재요망<br>(예시 : 201동301호 홍길동의 경우 -> 201301홍길동) |
| 잔금 | | | |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5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신청자 구비 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비고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O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본인 발급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 (외국인에 한함)<br>*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 |
| 공통 | O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
| 서류 | O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O |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이니서 발급(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br>*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포함하여 발급 |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 |
| | O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금<br>*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br>*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직계존·비속 | * 피부양 직계존·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 | O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6 유의사항 및 기타주요사항

###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 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부자에게 공급한다.

**▣ 본 건물은 사용검사(2023.03.17.)가 완료되었으며 실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잔금일)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실입주일에 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입주예정일은 계약시 지정된 날짜로 정하되 계약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 할 경우 잔금을 선납입하여야 함. 입주 예정일을 초과 할 경우 미납된 금원에 대하여 년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완납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연체료조로 부과함.
- 입주예정일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일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이 부과됨.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보수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사용승인 후 보급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분양사무실 내 모형 등의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시 실물을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되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별도의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계약면적 외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실물,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등 현황관계 및 실물을 꼭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실물을 확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 전 세대내 무단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의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주택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입면(2~10층) 의 마감은 수성페인트 마감, 복시시설 및 주차장(1층, 주출입구, PIT층(지하층) 등)의 마감은 석재(일부 석재뿜칠) 마감이며 입면 마감재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저층부 석재마감 구간이 상이하니 이에 대해 확인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 당일 혹은 이후에 접수 및 처리 완료 됩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권리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자에게 공동으로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당첨자(예비당첨자) 당첨세대 사전방문 및 방문확인 계약**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에 입주자모집을 하는 주택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실제 당첨된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세대 방문 기간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되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등이 다를 수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분할크기, 프레임 재료 및 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사양 등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시공되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도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이 있음을 인지하고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은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등 고정 설치물 설치 부위의 바닥, 벽, 천장 등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된 단위세대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 천연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요철이 발생된 단위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된 단위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승강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기계작동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무실에 문의 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 등이 시공되었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내부(창호 표면, 벽체, 천정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실외기 및 보일러 등의 가동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피난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개별검침 방식으로 원격검침은 설치되지 않으며,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세라믹 타일,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과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되었으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위세대 외부 창 한쪽 창에 방충망이 설치되었으며 피난공간은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 별도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재 등 비상시 56타입 발코니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대피 해야하므로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공간에는 어떠한 물건도 적치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피난 사다리를 통해 소음 전달, 누수, 프라이버시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56타입은 발코니 내에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되며 출입 등 이용 및 유지관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공간에는 어떠한 물건도 적치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56타입은 세대내 발코니에 별도 대피공간이 없습니다.
- 필로티 상부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별도로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위치에 따라 교차되어 설치되므로 각 세대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홈오토기기(월패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 입상 배관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환기구의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시공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소방시설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시공되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구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성능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공되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선홈통, 수전류 등은 성능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공되었으며, 제품 사양 및 위치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발코니에 위치하며, 에어컨 사용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 직접 수동으로 외부 발코니창을 개방하여 환기등을 병행하여야 함을 반드시 꼭 확인 후 계약하**

**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세대별로 2~5대까지 설치되었으며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되었습니다.**
- **각 실 보일러는 발코니에 설치되며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시공되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점검구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위생기구류(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의 설치 위치, 사양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천장 내 오배수배관은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 되었으며, 배관 유지관리를 위해 천정 점검구가 설치되었고,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급수요금은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었으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는 관계법규에 준하여 시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높이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외벽에는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됨.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칸막이벽의 재질이 일부는 경량벽체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경량벽면 거치(부착)시 거치(부착)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등의 중량물은 별도 보강을 하여야 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 공용부위

- 승강기 홀(공용부위)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홀(공용부위)은 층별로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개폐유무 등이 상이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기 및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승강기 홀(공용부위) 설치로 사생활 간섭 및 인접세대의 승강기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에 실물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세대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 단지 외부 / 내부 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장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계약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등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되었습니다.
- 아파트 경관은 인허가 절차에 따라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아 시공 되었습니다.
- 고층 세대는 옥상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B·I 설치위치, 외부조명 시설, 문주, 담장,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주택법」,「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 시공되었습니다.
- 저층부 실은 인근건축물, 주차출입구,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 계약체결 이후 주변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측면 및 전,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이 접해 있는 101동의 저층 일부 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열기 및 배기구에 다른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 접해 있어 방범에 취약하거나 소음, 진동, 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한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소음, 눈부심, 분진,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위치 변경 및 폐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소음 발생, 상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일조권, 조망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제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측벽에는 사인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사무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되었으며, 비상차 외에는 주차할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포함된 시설물과 기부채납 되지 않는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 아파트 옥상 및 지붕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1층 주차장 구역 인근에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위치로 인한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물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아파트 101동 계단실내 창호는 소방기준에 층당 1개소씩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 전용 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지하 2층 ~ 지상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는 총 101대(일반 : 51대, 평행 : 8대, 장애인주차 : 4대, 경형 : 10대, 확장형 : 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당 주차대수는 1.49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관제 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1층 주차 차단기만 설치 되어있습니다.**
- 주거시설(아파트)과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진출입 및 이용 동선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지상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이 주출입구 1층에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차량의 진출입시 불편할 수 있으며, 주차공간을 영역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차단기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의 사용은 각 세대별로 구획되거나 구분 및 배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및 승강기 홀 상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있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은 각동과 지역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환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내부 차로 높이는 2.3m로 택배차량 및 이사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진출입구 높이는 2.3m 이하로, 택배 차량 및 이사짐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Ⅶ- 0.0917g 임.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옥탑, 지붕 및 지상 일부 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이 공용홀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크기, 사양, 디자인 등 이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 이용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수도 공급을 위하여 남측 도로 인근에 맨홀이 설치 되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 후 시공완료 되었습니다.
- 각종 인입(상수/하수/오수/가스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저수조, 우수 처리시설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기계실, 발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해 외벽에 D.A 및 그릴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에 대한 지상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단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및 입점시기는 아파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및 분할창호 설치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으며, 단지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관리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 운영 및 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설비환기구))이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재활용 집적소, 재활용 창고, 야외 실외기실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 및 충전시설의 위치는 지하 1층 주차장에 2개소 있으며, 해당 설비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 **지하 2층에는 우수저수조, 저수조 지하1층에 제연휀룸, 통신실, 창고, 소화저수조(상부), 발전기실, 전기실, 정화조(관리층) 지상 1층 관리실(방재실)과 지상 15층 주민공동시설이 위치 하고 있습니다.**

##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한 해당 동 라인의 경우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보행자에 의해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특히, 지상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위한 시설물(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재활용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학교인접 등), 주변개발, 조망권, 소음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

결하시기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 바라며,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분양사무실 및 현장 실물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기타 사항

###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구분 | | 적용여부 | 사용,성능, 설치위치 , 설치개수(필요시) |
|---|---|---|---|
| 의무사항 이행여부 | 고기밀 창호 | 적용 |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은 기밀성늘 1등급이상 제품 적용 |
| | 고효휼 기자재 | 적용 | 고효율 펌프, 전동기 적용 |
|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용 | 거실,침실,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 장치 설치 |
| | 일관 소등창치 | 적용 | 세대내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고효율 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가진제품을 사용 |
|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절수설비 | 적용 |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설치 |

※ 의무사항 준수여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7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함
※ 설계조건 충족여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7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제7조제2항에 따라 벽체 및 창호성능이 친환경주택 단열 및 기밀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열원설비 및 고단열, 고기밀, 강제문, 창면적비의 기준을 만족함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구 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 | 비고 |
|---|---|---|---|
| 건축감리 | 건축사사무소 이뉴 | 220,000,00원 | 부가세 포함 |
| 구조감리 | 현건축구조 | 4,000,000원 | 부가세 포함 |
| 전기기계감리 | 주식회사 하늘천 | 48,840,000원 | 부가세 포함 |
| 소방감리 | 주식회사 하늘천 | 17,160,000원 | 부가세 포함 |

### ■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회사

| 구 분 | 시행수탁자 | 시행위탁자 | 시공사 |
|---|---|---|---|
| 상호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제주스토리 |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8층(여의도동)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5 102호(삼양이동)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5 101호(삼양이동) |
| 법인등록번호 | 110111-7126835 | 220111-0178111 | 131311-0147532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8층 (여의도동)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190099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방식
- 토지(사업부지)의 용도지역 : 준주거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 시 개별등기

## ■ 분양사무실 문의처

- 분양사무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72 유피테르6차 304호
- 분양문의 :064-723-0771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